

##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허가증(신고증) 재교부 안내

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(법률 제5443호)이 97.12.13 개정 · 공포되어 98.6.14부터 시행되고,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5812호)이 98.6.20부터 공포 · 시행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구비한 식육관련업체는 개정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98년 12월 13일 까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\* 협회 회원에게 공문발송(육가협 제98-301.10.7)

가.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재교부 대상 및 교부 기한

### 1) 허가증

-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
⑦ 식품제조 ·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사

→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 허가증으로 재교부

⑨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사 →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보관업 허가증으로 재교부

### 2) 신고증

-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

⑧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회원사 →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운반업 신고증으로 재교부

⑩ 식육판매업 ·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회원사 →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증으로 재교부

3) 재교부처 : 각 시 · 도

서울 및 직할시는 시청(축산위생과), 각 도는 도청(축산위생과)

4) 교부기한 : 98. 12. 13까지

5) 수수료 : 없음

나. 품목제조 보고

1) 식품제조 · 가공업의 허가증을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으로 재교부후 품목제조 보고시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각 시 · 도 축산위생과에 보고해야 함.

\* 참고 1: 별지 제28호 서식(품목제조보고서)

\* 참고2 :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, 시 행규칙 관련조항

### 〈참고 1〉

(별지 제28호 서식)

27274-24011 일  
1998. 5. 20 승인

210mm × 297mm  
<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>

##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 관련조항

축산물가공처리법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
<p>第5長 營業의 許可 및 申告 등</p> <p>제21條(營業의 종류 및 施設基準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屠畜業</li> <li>2. 集乳業</li> <li>3. 廉產物加工業</li> <li>4. 廉產物保管業</li> <li>5. 廉產物運搬業</li> <li>6. 廉產物販賣業</li> <li>7. 容器 등 製造業</li> <li>8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</li> </ul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)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축업 :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·처리하는 영업</li> <li>2. 집유업 : 원유를 수집·여과·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</li> <li>3.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식육가공업 :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</li> <li>나. 유가공업 :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</li> <li>다. 알기공업 : 알기공품을 만드는 영업</li> </ol> </li> <li>4. 축산물보관업 :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·냉장업. 다만,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li> <li>5. 축산물운반업 : 축산물(원유를 제외한다)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. 다만,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·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·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li> <li>6.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식육판매업 :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. 다만,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</li> </ol> </li> </ol>	

축산물가공처리법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
<p>第25條(品目製造報告)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產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畜產物을 加工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等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가 容器 등을 製造하는 때에는 그 品目の 製造方法說明書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中요한 사항을 变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.</p> <p>나.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: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(간·심장·위장·비장·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)과 머리·다리·꼬리·뼈·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</p> <p>다. 우유류판매업 : 우유대리점·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</p> <p>라. 축산물수입판매업 :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</p> <p>7. 용기등제조업 : 착유기(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포함한다)·냉각기·유방세척기·집유텅크·원유통·도축검인기 또는 도축검인용 색소를 제조하는 영업</p>	<p>제37조(품목제조의 보고 등)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용기등 제조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조방법설명서</li> <li>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구격 검토서(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구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)</li> <li>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용서(식육가공품·유가공품 및 일가공품에 한한다)</li> </ol>

축산물가공처리법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	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
부 칙	부 칙	부 칙
<p>第1條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 과한 날부터 施行한다.</p> <p>第5條(畜產物加工業 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製造 · 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食肉加工品 · 乳加工品 또는 芥加工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產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,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食品保存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產物을 보관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產物保管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이 法 시행후 6月 이내에 市 · 道知事에게 許可證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하되, 手數料는 免除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第6條(畜產物運搬業 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運搬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產物을 運搬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產物運搬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,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肉販賣業 · 食肉副產物專門販賣業 · 牛乳類販賣業 또는 食品등輸入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 중 이 法에 의한 畜產物을 販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產物販賣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,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 · 포장類 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이 法 시행후 6月이내에 市 · 道知事에게 申告證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, 手數料는 免除한다.</p>		